

# 외부감사 대상 기준 축소에 대한 소고: 자산 총액 기준을 중심으로

김 원 웅 회계사 (wonwoong.kim@cgs.or.kr)

- ▶ 올해 9월 입법예고를 거쳐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직전연도 말 자산 총액 기준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개정의 이유는 경제성장 등 여건변화와 중소기업의 경영사정 감안이었음
- ▶ 회계투명성에 대한 평가 및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영국 등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엄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평균 감사수수료는 약 1,200만 원으로 이들 기업의 접대비와 비교 시 약 4분의 1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됨
- ▶ 외부감사는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필요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 기업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중소기업의 외부감사를 통해 효익을 누리는 주체들이 어떻게 기업의 부담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머리말

외부감사제도는 1980년 12월 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198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내부감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적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위하여 외감법을 제정한다고 하였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외감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981년 9월 제정 및 시행된 외감법 시행령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기준이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sup>1)2)</sup>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자산 총액 외에 여러 기준들이 있으나 본고는 자산 총액 기준을 중심으로 이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1) 이번 개정으로 12월말 결산 주식회사는 2014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이 120억 원 미만인 경우 2015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강제되지 않는다.

2) 지금까지 자산 총액 기준은 외감법 제정 시 30억 원에서 1990년 40억 원, 1993년 60억 원, 1998년 70억 원, 2009년 100억 원에서 올해 12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간 개정 사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도별 시행령 재·개정이유에 기재되어 있으며, 주된 이유는 경제성장 등 여건변화, 중소기업의 경영사정 감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 해외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과의 비교

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외부감사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나라는 회사법 등에 외부감사 대상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표 1>은 미국을 비롯한 4개국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외부감사 해외사례

국가	회사유형	외부감사 의무		외부감사기준
		근거 규정	대상	
미국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증권 거래법	상장주식회사 및 자산 1,000만 달러 이상, 주주 500명인 이상 장외등록회사	-
영국	공개주식회사, 비공개 유한책임회사, 무한책임회사, 공동이익회사	회사법	모든 회사 (소규모회사 면제)	소규모회사 기준: 다음 중 2이상 해당(매출액 £650만(112억 원), 총자산 £326만(56억 원), 종업원 50인 이하)
독일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상법	모든 회사 (소규모회사 면제)	소규모회사 기준: 다음 중 2이상 해당(매출액 968만유로(134억 원), 총자 산 484만유로(67억 원), 종업원 50인 이하)
호주	공개회사(주식회사), 비공개회사(유한회사), 무한책임회사	회사법	모든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	소규모 회사 기준: 다음 중 2이상 해당(매출액 2,500만 호주달러(239억 원)이하, 자산 1,250만 호주달러(119억 원)이하, 종업원 50인 이하)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1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산 총액 기준으로 영국과 독일의 경우 56억 원, 미국과 호주의 경우 각각 약 110억 원, 약 119억 원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개정된 우리나라의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책과 제도는 단순히 특정 상황만을 반영하여 제·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별 외부감사 면제 기준을 한정된 지표만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력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외부감사 면제 기준이 어느 정도 엄격한 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다음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2014년에 발표한 세계 GDP 순위의 일부<sup>3)</sup>이다.

3) 외부감사 제외 기준의 비교를 위해 기술한 미국, 독일, 영국, 호주에 한하여 GDP를 기재하였다.

〈표 2〉 세계 GDP 순위 (명목기준)

순위	국가명	GDP (십억 US\$)	우리나라GDP 대비 국가별 GDP (배)
1	미국	16,799.7	13.7
4	독일	3,636.0	3.0
6	영국	2,535.8	2.1
12	호주	1,505.3	1.2
15	한국	1,221.8	-

출처: WEF(World Economic Forum)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등은 우리나라 보다 경제력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 면제 기준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엄격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국<sup>4)</sup>과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경제력 규모가 약 2~3배 더 큼에도 외부감사 면제 대상 기준이 우리의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보다 약 14배 가량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나 우리의 기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sup>5)</sup>

#### 외부감사 제외 기업의 감사보수에 대한 검토

지금껏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의 축소 또는 외부감사 지정제 확대 반대의 주요 근거는 ‘외부감사 비용으로 기업의 부담이 크다’이었다.<sup>6)7)</sup> 이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이유 역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의 부담은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 총액 10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의 약 2,000개의 기업이 연간 약 240억 원의 외부감사 수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sup>8)</sup> 즉, 이들 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평균적으로 회사 당 약 1,20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본고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의 접대비와 기부금을 외부감사 수감비용과의 비교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추론하여 보고자 한다. 국세청이 게시하는 「2013 자산규모별 접대비·기부금 신고현황」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법인<sup>10)</sup>들의 평균 접대비는 약 4,962만 원이었으며, 평균 기부금은 약 749만 원, 평균 수입금액<sup>11)</sup>은 약 145억 원이었다. 외부감사 수감비용은 접대비의 약 24%수준이며,

4) 영국은 Companies Act 1862를 통하여 외부감사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법제화를 이루었다.

5) 호주의 경우 GDP(우리나라의 약 1.2배) 및 외부감사 대상 자산 총액 기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2014년 WEF가 발표한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에 따르면 호주는 전체 144개국 중 회계투명성 부문에서 15위(우리나라는 84위 기록)를 기록하였다.

6) 대한상공회의소, 2006.2, 「중소기업의 외부감사부담 완화 건의」

7) 이데일리, 2014.9.3, 「지정감사 확대 ① 부실기업 외부감사인 지정 확대 ‘복잡한 셈법」

8) 금융위원회, 2013.10.28, 「유한회사·비상장 대기업 등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 p.11

9) 외부감사 수감비용의 경우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한 모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세후 기준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가액은 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국세청의 2013년 「자산규모별 8-3-6 접대비·기부금 신고현황 (2/3)」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10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인 법인(주식회사만이 아닌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포함되어 있음)의 수, 접대비, 기부금이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아 자산 규모가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법인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평균 수입금액 대비 외부감사 수감비용(약 0.08%), 접대비(약 0.34%), 기부금(약 0.05%)이다. 이를 토대로 외부감사 수감비용과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 및 기부금을 비교하여 보면 외부감사 수감비용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sup>1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의 이유로 외부감사 대상을 축소하는 배경은 접대비 등의 경우 부정적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영업 활동의 확장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외부감사 수감비용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외부감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활동, 영업활동, 근로자와의 임금 협상, 정부의 세정활동 등에 그 쓰임이 크다 할 수 있으며, 단락을 달리하여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중소기업에의 외부감사 필요성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기업의 지난 한 해 실적이 공시되면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해석과 향후 전망치가 자본시장 전반에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상장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그 영향이 매체를 통하여 크게 보도가 되지 않을 뿐 이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소기업의 재무상태, 실적 등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면에서 중요한 것일까?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던 것 같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문구를 누구나 한 번쯤 접하여 보았을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 중소기업에의 투자는 쉽지 않다. 이는 투자의 기초인 재무정보의 충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회계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다소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재무정보는 신뢰성이 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의사결정 지표의 원천이 되는 재무정보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들 기업에 누가 쉽사리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가 외부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회계인프라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외부감사<sup>13)</sup>는 이들 중소기업의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회복 내지 제고할 수 있는 첫 단추인 셈이다.<sup>14)</sup>

투자자 뿐 아니라 은행과 같은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주식에 대한 투자이든 자금 대출이든 그 의사결정의 큰 맥락과 줄기는 다르지 않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 중소기업의 재무정보를 충실히 담았는가를 판단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감사의 수감 여부는 이들 중소기업의 대출심사의 첫 관문이 될 것이다.<sup>15)</sup> 또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 조달청 등 정부기관 및 대기업 등에 납품을

11) 국세청의 「국세통계용어사전(2013)」에 따르면 세법상 수입금액이란 하나의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재화로서 금액 또는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12) 접대비와 기부금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세후 기준으로 외부감사 수감비용과 이들을 비교할 경우 그 차이는 보다 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3) 감사기준 및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된 감사를 전제로 한다.

14) 투자를 실행함에 있어 비재무정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간하는 각 중 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5) 김광윤·심충진, 2011.3. 「중소기업의 회계실태 분석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제·세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p.18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자금 차입 시 은행의 대출조건을 보면, 신용보증서 보다는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는 비율이 2008년(44.3%), 2009년(40.1%), 2010년(44.7%)이며,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 조건은 위 연도별로 26.7%, 32.0%, 25.3%이라고 한다. 동 보고서는 위와 같은 현상이 재무제표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며, 특히 기업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규모의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회계 투명성 담보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인증기관에서도 적정성이 담보되는 재무정보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 역시 중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데, 감사보고서를 통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들로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을 아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sup>16)</sup> 현재의 근로자가 회사와 임금 협상을 하거나 잠재적 근로자가 입사 지원하는 경우 공시된 감사보고서가 있다면 이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재무정보 투명성이 더욱 요구된다.<sup>17)</sup>

〈표 3〉 수입규모별 법인세 결정·경정 현황

(단위: 백만 원)

수입금액 규모별	조사 건수 (A)	결정 건수 (B)	신고건수 (당초) (C)	결정건수 (경정) (D)	증감액 (E)=(D-C)	결정비율 (B/A)	탈루세액 비율 (E/C)
~ 3억	10,688	6,340	287,927	343,961	56,034	59%	19%
~ 5억	2,751	1,959	25,763	35,377	9,614	71%	37%
~ 10억	4,560	3,291	63,893	99,042	35,149	72%	55%
~ 20억	5,505	4,018	112,912	177,842	64,930	73%	58%
~ 50억	7,944	6,013	303,297	447,502	144,205	76%	48%
~ 100억	5,497	4,170	515,117	660,033	144,916	76%	28%
~ 200억	4,381	3,452	735,691	910,015	174,324	79%	24%
~ 300억	1,883	1,426	590,323	709,795	119,472	76%	20%
~ 500억	2,067	1,553	927,890	1,034,965	107,075	75%	12%
~ 1,000억	2,587	1,978	2,317,366	2,531,463	214,097	76%	9%
~ 5,000억	2,815	2,164	8,527,041	9,249,495	722,454	77%	8%
5,000억 ~	1,221	997	109,467,545	110,416,601	949,056	82%	1%
합계	51,899	37,361	123,874,765	126,616,091	2,741,326	72%	2%

\* 출처: 국세청, 2013.12, 「2013 국세통계연보」

낮은 세무조사 비율<sup>18)</sup>과 함께, 〈표 3〉을 통하여 알 수 있듯 수입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탈루세액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세정투명성 등 정책 목표 달성에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지금까지 이해관계자별로 중소기업의 외부감사로 인한 효익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주체들이 외부감사의 효익을 누리고 있으나 외부감사 수감비용을 중소기업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16) 일정 요건을 만족하여 상법상의 회계장부열람권 등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를 현실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신고납부제도는 부과결정제도와 달리 납세의무 있는 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8) 유한옥, 2008.12,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득파악체계 정비방안 - 소득조사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2008-11, pp.72-74에 따르면 미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1.33%(2007년), 일본의 경우 4.8%(2005년)라고 하며 일본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세무조사비용이 상당히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0.91%(2012년 기준, 출처: e-나라지표)이며,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19) 또한 정부가 지향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충실한 회계정보의 생산·전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공정한 외부감사를 통하여 이를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2014.2,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p.73에 따르면 2010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17.9%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24.7%에 이를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우리나라와 해외사례 비교 시 언급되었던 국가들의 2010년 기준 지하경제규모는 미국(9.1%), 독일(15.1%), 영국(12%), 호주(13.4%)이었다.

중소기업의 외부감사에 따른 효익을 얻는 이해관계자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해 보인다.

## 결론

올해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는 각각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60개국 중 59위, 144개국 중 84위로 발표하였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속속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일정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지정제의 확대, 주식회사만이 아닌 유한회사에까지 외부감사를 확대 실시할 것임을 발표하는 등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부감사에 대하여 피감사회사들과 정책당국은 외부감사를 필요보다는 규제로 인식하는 듯하다.<sup>20)</sup> 본고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 크지 않은 외부감사 수감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이 명시적 개정 이유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설혹 비용이 부담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효익을 얻는 다수 당사자들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을 강구하기보다 이를 회피하는 방식이 선택되는 것을 보면 외부감사에 대한 인식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이 철저한 외부감사를 위해 회계법인에 외부감사 수수료의 인상을 요청하였다. 그는 감사수수료를 아끼려다 내부통제와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수백 배의 대가를 치러야 하며, 제대로 된 외부감사는 재무적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일견 당연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이색적이고 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다.

결국 외부감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sup>21)</sup> 외부감사를 ‘발전을 위한 필요’가 아닌 ‘엮매기 위한 규제’로 생각하는 한 투명성에 대한 외침만 수없이 강조되는 불투명한 현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20) 정책브리핑, 2014.9.3., 「현장건의 및 손톱 밑 가시 해결 주요사례」

21) 외부감사인 역시 감사기준과 공인회계사법을 비롯한 각 종 법령, 윤리기준을 준수하며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